#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천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868

발의연월일: 2025. 4. 16.

발 의 자:서천호·우재준·이만희

서명옥 · 김선교 · 김예지

최보윤 • 박덕흠 • 김용태

김장겸 · 정성국 의원

(119]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양봉농가에서 월동 중인 벌떼가 폐사하거나 실종되는 봉군붕 괴증후군이 발생함에 따라 월동 중이던 꿀벌 약 40만 봉군(약 78억 마 리)이 폐사되는 등 양봉농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 음.

그러나 집단폐사의 원인을 기후변화, 응애류, 먹이부족, 농약살포, 면역력 약화, 관행적인 사양관리 등 여러 가지로 해석하며 명확한 원 인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, 현행법은 꿀벌의 개체 수 확보 및 집단폐사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.

또한, 꿀벌 집단폐사가 양봉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미비한 상황임.

이에 꿀벌의 집단폐사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꿀벌의 집단폐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봉 농가의 소득안정과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제3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

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꿀 벌의 집단폐사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 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5조제2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3. 꿀벌의 집단폐사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・연구 및 지원계획

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꿀벌의 집단폐사로 인하여 직·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	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
무) ① ~ ③ (생 략)	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
	봉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
	하여 꿀벌의 집단폐사가 양봉
	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
	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
	<u>야 한다.</u>
제5조(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	제5조(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
수립) ① (생 략)	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	②
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
1. ~ 12. (생 략)	1. ~ 12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13. 꿀벌의 집단폐사로 인한 양
	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ㆍ
	연구 및 지원계획
<u>13.</u> (생 략)	<u>14.</u> (현행 제13호와 같음)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	제12조(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
지원) (생 략)	지원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
	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꿀
	벌의 집단폐사로 인하여 직ㆍ
	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양봉농

<u>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</u> <u>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</u> <u>할 수 있다.</u>